

#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2023년 3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2023년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5. ~ 11.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나. 위탁내용 :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및 관리

- 2023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홍보
- 성북 시티투어버스 사업계획(코스개발 등)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수행인력, 버스임차, 관광편의 등
- 기타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다. 위탁비용 : 총117,000천원

라.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
  -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인 자
- 마. 위탁체 선정 :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